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중전에는 議會의 의결을 얻어 市長이 고시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를 개선하여 條例에 사용료를 직접 규정하고, 둘째, 사용료 감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셋째,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 그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네번째는 사용료징수, 과태료징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는 地方自治法 제 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長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
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사용료 등) ①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을 위한 행사
3. 장애인·국가유공자·65세 이상 노인 등 특히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제2항의 사용료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1항·제4항에 규정된 사용료·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⑥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 사용료

가.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축	구	장	면당	1회	2시간이내,	단체	독점사용시	4,000원
야	구	장	면당	1회	2시간이내,	단체	독점사용시	1,500원
배	구	장	면당	1회	2시간이내,	단체	독점사용시	600원
배	드	민	면당	1회	2시간이내,	단체	독점사용시	1,000원
정	구	장	면당	1회	2시간이내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수 영 장 (국민체육진흥기금포함)	어린이(만4~12세)	800원
	청소년(만13세~18세)	1,300원
	성 인(만19세이상)	1,700원
빙 상 장	어린이(만4~12세)	800원
	청소년(만13세~18세)	1,100원
	성 인(만19세이상)	1,500원
롤 러 스 케 이 트 장	어린이(만4~12세)	500원
	청소년(만13세~18세)	600원
	성 인(만19세이상)	700원

나. 주차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위 치	1회주차(1구획)		1일 주차	월 정기권
	최초 30분	초과 15분		
여 의 도 지 구	1,100원	500원	12,100원	140,000원
기 타 지 구	1회 2,000원(24시간이내)			
○ 공휴일 : 무료				
○ 사용료 정수시기, 정수시간 및 기타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정한다.				

다. 기타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영 화 촬 영	주간 1회당(야간은 주간외 2배)	65,000원
녹 화	1시간당	13,000원
	초과시간당	6,500원
남 시 터	남시대 1대 1일	1,000원
	1대 초과당 1일	500원
거 복 선 관 램	어린이(1회)	200원
	청소년(1회)	500원
	성 인(1회)	700원
잔 디 발 행 사	100명이상 독점 모임행사시 2시간 기준 1m ²	10원

13. '97장애인福祉基金運用計劃案(서울特別市長提出)

(15時 20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7 장애인福祉基金運用計劃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保健社會委員會 劉俊相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俊相議員 保健社會委員會 소속 劉俊相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그리고 先輩議員 여러분

을 모시고 제92회 臨時會 기간 중 保健社會委員會 소관 '97장애인福祉基金運用計劃案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동 안건은 地方財政法 제110조 및 서울特別市 장애인福祉基金設置 및 運用條例에 의거 조성된 기금을 서울特別市議會의 의결을 거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一般會計로부터 전입된 30억원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시중은행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2월 18일 우리 保健社會委員會 제1차 회의에서 執